인도네시아 파충류 불법 반출 주의(2)

주인도네시아대사관, 2025.5.16.(금)

1. **최근 1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우리 국민이 검역서류 없이 다량의 뱀, 도마뱀, 이구아나 등 파충류를 밀반출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위해 출국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.**

   ※ 인도네시아 <동・식물 검역관련 법령-2019년 법률 제21호>는 야생동물의 무단 반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 부과

2. **인도네시아에서 파충류 수출/반출은 인가된 업체만 가능하며, 개인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최근 4번의 적발, 조사 사례를 보면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최대 50여일 조사를 받았습니다. 고액 단순운반 알바에 속아 기소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.**

   ※ 대사관에서는 단순운반 알바로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2024년 8월 1차 주의보를 발령했고, 금년 1월말부터 인도네시아 입국시 안전정보 발송에 포함시켰으며, 2월에는 YTN '해외안전여행정보' 동영상을 제작하여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.

3. **파충류 반출은 산림부 자연자원보호소**(BKSDA) **수출허가서, 검역청 검역서류와 한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(**https://www.wadis.go.kr**)의 수입허가 등록이 필요하며, 사전 등록된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.**

※ 검역소장은 (밀반출이 계속 발생하여) 다음부터는 검찰에 신속 송치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. 고액 알바에 속아 피해보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.